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변리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19년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의 민간위탁사항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변리사시험 시행·관리, 변리사 등록·사무소·특허법인의 설립인가 등 특허청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법령으로 이관하고, 시험 일정 연기 근거규정 신설 등 변리사시험의 원활한 시행·관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변리사시험 일정 연기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의3)

- 천재지변·감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일정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인용조문 오류 정정(안 제16조의4)

- 법 개정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함에 있어 인용조문 표기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임

다. 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 법령에서 통합 규정(안 제2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와 「변리사법시행령」 제24조로 이원화되어 있던 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법령에서 일괄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 업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 신설([별표2])

-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하던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 기준점수 완화 사항을 법제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31. ~ 2022. 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시험의 연기·변경) ① 특허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4 제4항 중 “법 제6조의4”를 “법 제6조의13”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등록 업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의 거부
3.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4.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5.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6.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7. 법 제6조의3제2항, 영 제14조제1항 및 법 제6조의12제2항,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신청
8.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접수
9. 법 제6조의10제1항,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10. 법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11.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종류		기준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1. 토플 (TOEFL)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PBT 560점 이상	PBT 373점 이상
		IBT 83점 이상	IBT 41점 이상
2. 토익 (TOEIC)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387점 이상
3. 지텔프 (G-TELP)	미국의 ITSC(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51점 이상

	Proficiency)을 말한다.		
4.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85점 이상	245점 이상
5.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350점 이상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는 제1차 시험 시행일 전까지 그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3.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을 말한다. 4.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기준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점수를 말한다. 5. 청각장애인의 합격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변리사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3(시험의 연기·변경) ①		
		<u>특허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u> <u>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u> <u>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u> <u>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u> <u>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u> <u>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u> <u>다.</u>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4[특허법인(유한)의 손해		제16조의4[특허법인(유한)의 손해		
배상준비금 적립 등]		배상준비금 적립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허법인(유한)은 손해배상		④ -----		
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구성		-- 제6조의13 -----		
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포함한		-----		
직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		-----		
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		-----		
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		-----		

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24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
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
고의 접수
2. 법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3.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
5제1항에 따른 특허법인(유
한)의 설립인가 및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4.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허
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
조의2에 따른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
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
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10조
에 따른 등록 업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의
거부
3.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4.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
납
5.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신

	<u>고의 수리</u> <u>6.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u> <u>8.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접수</u> <u>9. 법 제6조의10제1항,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신청의 접수</u> <u>10. 법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u> <u>11.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u>
--	---

[별표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종류		기준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1. 토플 (TOEFL)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PBT 560점 이상	PBT 373점 이상
		IBT 83점 이상	IBT 41점 이상
2. 토익 (TOEIC)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387점 이상
3. 지텔프 (G-TELP)	미국의 ITSC(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51점 이상

	Proficiency)을 말한다.		
4.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85점 이상	245점 이상
5.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350점 이상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는 제1차 시험 시행일 전까지 그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3.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을 말한다. 4.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기준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점수를 말한다. 5. 청각장애인의 합격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변리사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연 락 처	042-481-5183